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학칙

(제정 2004. . .)
(1차 개정 2004. 11. 29.)
(2차 개정 2008. 09. 10.)
(3차 개정 2008. 11. 06.)
(4차 개정 2009. 12. 09.)
(5차 개정 2011. 03. 28.)
(6차 개정 2012. 06. 01.)
(7차 개정 2015. 04. 07.)
(8차 개정 2017. 09. 11.)
(9차 개정 2017. 11. 21.)
(10차 개정 2020. 05. 07.)
(11차 개정 2021. 11. 0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는 신.구약 성경을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칼빈의 5대 강요를 신조로 삼아 신앙과 신학의 보수성을 보존하며 계승하는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이다. 이러한 신앙의 노선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역사관, 신학성을 확립하여 복음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적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원대학교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3조 (과정)

학교에 학술편위과정과 전문학위과정을 두고, 각기 박사학위 과정· 석사학위과정과 연구과정을 둔다.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 (학과· 학위 및 정원)

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학위 종별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4항에 따른 정원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항에 따라 계약학과에서 설치 운영하는 계약학과의 학위 과정에 따른 정원은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과정	학위구분	학위	전공	입학정원
박사학위	학술학위	철학박사 (Ph.D.)	신학(구약,신약,역사,조직,실천) -실천신학(설교,예배,선교,기독교교육,목회상담) 사회복지학 코칭학 상담심리치료학 문학언어치료학	10명
		신학박사 (Th.D.)	신학(구약,신약,역사,조직,실천) -실천신학(설교,예배,선교,기독교교육,목회상담)	
	전문학위	목회신학박사 (D.Min.)	목회학 실천신학(설교,예배,선교,기독교교육,목회상담)	
석사학위	학술학위	신학석사 (Th.M.)	신학(구약,신약,역사,조직,실천) -실천신학(설교,예배,선교,기독교교육,목회상담)	52명
	전문학위	문학석사 (M.A.)	사회복지학, 경영복지학, 기독교교육학, 선교학, 기독교실용음악학, 상담학, 문학언어치료학, 상담심리치료학, 코칭학, 목회상담학	
		목회학석사 (M.Div.)	목회학	

[제2장 학년· 수업·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 (수업)

- ① 학교의 수업은 전일제로 실시하며, 계절제 수업으로도 할 수 있다. 단 계약학과의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계절제 수업은 6학점 이내로 한다. 단, 실습에 관련된 과목은 예외로 한다.
- ② 필요에 따라서 공개강좌와 현장 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휴업일)

- ① 정기휴업일 : 주일(일요일), 국정 공휴일, 개교기념일(기념행사), 하계 방학, 동계 방학
- ② 임시 휴업일 : 비상 재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항의 수업일수에도 불구하고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에 따라 목회 실습 및 기타의 과제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제3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제9조 (입학 및 전형 시기)

- ① 학교의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는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입학 전형일은 총장이 정한다.

제10조 (입학 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 전형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

- ① 철학박사(Ph.D.) 신학전공 : 목회학석사(M.Div) 취득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신학석사(Th.M. 또는 취득 예정자 포함) 취득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 철학박사(Ph.D.) 기타전공 : 기타전공자는 M.A.이상의 학위가 있다고 인정된 자. 단, 동일전공자의 경우 우선 입학할 수 있다.
- ③ 신학박사(Th.D.) : 목회학석사(M.Div) 취득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신학석사(Th.M.) 또는 문학석사(M.A.-신학전공) 취득자(취득 예정자 포함)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④ 목회신학박사(D.Min.) : 목사안수를 받은 자로서 목회학석사(M.Div.) 혹은 신학석사(Th.M. 또는 취득예정자 포함) 취득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⑤ 목회학석사(M.Div.) · 문학석사(M.A.) : 국내외 정규대학 졸업(예정)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⑥ 신학석사(Th.M.) :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 된 자로, 목회학석사(M.Div.) 학위를 받은 자 또는 목회학석사(M.Div.)에 준하는 과정을 마친 자로서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제11조 (입학 전형)

입학 전형은 서류 전형·실기 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에 의한 일반 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의 특성에 따라 일부분만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에 정한다.

제12조 (지원서류)

학교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소정기 일내 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목회학석사, 문학석사)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대학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3) 대학 성적 증명서 1부
- 4) 세례증명서 1부(목회학 석사 과정에 한함)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사진(여권) 2매
- 7) 당회장 추천서(목회학 석사 과정에 한함)
- 8) 자기소개서 1부
- 9)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2. 신학석사과정(Th.M.)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목회학석사(M.Div.),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의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3) 목회학석사(M.Div.)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의 성적 증명서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사진(여권) 2매
- 6) 재직증명서(현직)
- 7) 자기소개서 1부
- 8)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3. 박사과정(Ph.D./ Th.D./ D.Min.)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2) 학.석사 졸업(예정) 증명서 각 1부
- 3) 학.석사 성적 증명서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 1부
- 5) 사진(여권) 2매
- 6) 재직증명서(현직)
- 7) 자기소개서 1부
- 8) 개인정보조회동의서 1부
- 9) 연구계획서 1부
- 10) 기타서류(해당전공에서 인정할 수 있는 기타서류)

제13조 (편입학)

- ① 당해 연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편입학 자격은 각 과정 및 학과별로 해당 학기 이상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14조 (재입학)

- ① 학교 제적자 혹은 자퇴자 중에서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 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재입학 시에는 제적 혹은 자퇴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업 및 재학 연한]

제15조 (수업연한)

학교 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철학박사(Ph.D.), 목회신학박사(D.Min.), 신학박사(Th.D.) 과정 : 3년 6학기
- ② 목회학 석사(M.Div.) 과정 : 3년 6학기
- ③ 신학 석사(Th.M.)· 문학 석사(M.A.) 과정 : 2년 4학기

제16조 (재학 연한)

- ① 재학 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로 한다. 다만, 편입학 및 재입학자의 재학 연

한은 편입 또는 재입학한 후의 수업 연한의 2배로 한다. 단, 계약학과 재학 연한은 예외로 한다.

- ② 휴학 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재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재학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전 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 청구 논문을 작성중인 자는 8년 이내로 한다.

[제5장 등록·휴학·복학·제적·퇴학]

제17조 (등록)

- ① 학생의 등록은 입학 등록·학기 등록·학점 등록·논문 등록 등으로 구분한다.
- ② 학생은 전항의 구분에 따라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휴학)

- ① 휴학은 1회 휴학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단, 병역으로 인하여 휴학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②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총장은 건강상 수학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지도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복학)

- ① 휴학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한다.
- ② 복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초 등록 기간 내에 복학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 ① 성적 불량자 또는 신체 허약으로 인하여 학업수행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② 1개월 이상 무계출 결석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 무성의한 자

- ③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④ 소정 기간 내 등록(연구등록 포함)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⑤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⑥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
- ⑦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21조 (퇴학)

자원 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 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교과과정 이수]

제22조 (이수 과목)

학교의 교육과정은 각 전공별 교육과정에 준한다.

제23조 (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② 매 학기 수업 시간표는 개강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4조 (전공 선택) 삭제

제25조 (선수 과목)

전공과목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기초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교육과정에 이를 선수 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 (이수 단위)

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의 이수단위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졸업학점)

학생이 취득해야 할 과정별 최저 학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철학박사(Ph.D.)신학전공, 신학박사(Th.D.) 학위 과정 : 51학점(논문 6학점포함)
- ② 철학박사(Ph.D.), 기타전공 학위 과정 : 45학점(논문 6학점 포함)
- ③ 목회신학 박사(D.Min.) 학위 과정 : 45학점(논문 6학점 포함)
- ④ 신학석사(Th.M.) 학위 과정 : 34학점(논문 4학점 포함)
- ⑤ 문학석사(M.A.) 학위 과정 : 27학점(논문 4학점 별도 취득 포함 가능)
- ⑥ 목회학석사(M.Div.) 학위 과정 : 96학점(논문 4학점 별도 취득 포함 가능)
- ⑦ 신학전공과정 성경지리연구 필수(3학점) : 졸업 전 이수 / 타전공자는 일반 선택으로 인정(단, 불가피한 경우 특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 (학점취득 제한)

학생은 매 학기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는 학점 취득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9조 (수강 신청)

- ① 학생은 소정 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과목에 대하여 학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 ② 승인된 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은 소정기일 내에 교무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신청된 과목을 수강하지 아니하거나 시험에 응하지 아니하여 성적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그 과목 성적을 F로 한다.
- ④ 수강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수강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신학석사(Th.M.) 및 박사과정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30조 (학점 인정)

- ①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종료일로 한다.
- ② 등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한다.
- ③ 편입 학생의 학점 인정은 전 재적 학교에서 이수한 학과 내용 또는 학업 성적을 심사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④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이나 법령에 의한 이와 동등한 고등교육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교의 교육과정 범위 내에

서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 (수료)

학업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학위 과정 전 과정의 수료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 (학업평가)

① 학업 성적 평가의 등급 및 평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사정한다.

등급	점수	평점	설명	등급	점수	평점	설명
A+	97-100	4.5	우수	C+	77-79	2.5	양호
A	94-96	4.3	우수	C	74-76	2.3	양호
A-	90-93	4.0	우수	C-	70-73	2.0	양호
B+	87-89	3.5	우량	D+	67-69	1.5	보통
B	84-86	3.3	우량	D	64-66	1.3	보통
B-	80-83	3.0	우량	D-	60-63	1.0	보통
I			보류	F	0-69	0	불량

② 보류(INC : Incomplete) 평가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목 이수를 소정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줄 수 있다.

③ 합격(Pass)은 경건회, 연구, 실습, 실기, 세미나, 각종 고사, 논문 등의 과목에서 성적으로 학점은 인정 하나 성적 계산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합격할 때에 줄 수 있다.

④ 불합격(Non Pass)은 경건회, 연구, 실습, 실기, 세미나, 각종 고사, 논문 등의 과목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때에 처리되며, 졸업 때까지 합격해야 한다.

[제7장 졸업과 학위]

제33조 (졸업 시기)

졸업은 2월(전기)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학기에 전 과정을 이수한 자의 졸업은 8월(후기)에 할 수 있다.

제34조 (졸업 사정)

① 졸업 대상자에 대한 졸업사정 심의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행한다.

② 졸업 사정 심의의 절차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5조 (논문 제출)

- ①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수업연한의 정규 학기 등록을 필한 자
 - 나. 소정의 이수 학점을 취득한 자
 - 다.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3.0(B) 이상인 자. 다만, 목회학 석사학위 과정은 2.5.(C+) 이상인 자
 - 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마. 재학 년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② 학위청구논문은 최종 졸업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논문 심사 및 공표)

-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논문을 심사(구술포함)하게하며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정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은 각 전공분야(복지 포함)별로 하되 석사 심사는 3명, 박사 심사는 5명으로 구성한다.
- ③ 학위 청구 논문의 심사 판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판정한다.
- ④ 학위를 받은 자는 학회 및 학술지에 그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그 논문이 이미 공표되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표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7조 (학위 수여 및 취소)

- ① 총장은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졸업 사정 심의에 통과한 자에게는 학위 증서를 수여한다.
- ② 학술과 문화 향상에 특수한 공적이 있거나 국가와 교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37조의 2 (정원 외의 졸업)

- ① 본 학칙 제 38조 단기교육과정과 제 40조 연구과정에 따라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에 따른 학위과정의 졸업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 5항에 따라 학위과정의 졸업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장 단기교육과정 . 공개강좌 . 연구과정 . 외국학생]

제38조 (단기 교육과정)

- ① 학교는 필요에 따라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이수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단기 교육과정은 정보화 또는 목회자 편목 과정, 상담 관련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단기 교육과정의 과목 또는 제목, 기간, 수강 정원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 마다 총장이 정한다.
- ④ 학위과정에 입학할 자격을 갖추거나 갖추하고자 하는 자로서 단기 교육 과정을 본 대학 학위과정의 학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수강자의 경우, 학업평가를 받고 소정의 등록비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공개강좌)

- ①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학교 정상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직무, 교양 또는 연구 상 심오한 학식 또는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기간, 수강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개설 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한다.
- ④ 수강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이수자에게는 총장 명의의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0조 (연구 과정)

- ①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과 각종 신학교(4년제) 졸업자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각 연구과정(E.Q.)에 입학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입학한 자가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 총장 명의의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전공 학점은 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에 해당 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④ 연구 과정의 수강자는 해당되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인)

- ① 외국인으로서 학교 학위 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 대학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된 외국 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하여 입학 자격을 인정한다.
- ② 외국인으로서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어 사용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 ③ 학교에서 별도로 지정한 학과는 외국인을 위한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입학이 허락된 학생은 한국어 사용 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 (단, 해당언어 사용 국가가 영어권 국가로 지정되어야 한다.)
- ④ 졸업 이수학점은 내국인 정원과정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다.

[제9장 학생 활동]

제42조 (총학생회)

- ①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총학생회를 둔다.
- ② 총학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총학생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등)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장학금 및 상벌]

제43조 (장학생)

- ①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44조 (학생의 표창)

학생으로 수업 태도에 모범을 보이고 특별히 봉사와 선행이 뛰어나 귀감이 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상인에 의해 총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45조 (학생의 징계)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학칙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 ① 비 성경적 교리를 신봉하거나 선전하는 자
- ② 학생 상호간의 폭행 구타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 피해가 현저하게 드러난 자
- ③ 학교의 비품을 파손하거나 절취한 자
- ④ 각종 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
- ⑤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으로 예배, 학교 행사 및 수업에 빠지거나 방해하는 자
- ⑦ 타 학생의 재산에 손해를 준 자
- ⑧ 총장의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준 자
- ⑨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결석을 하는 자
- ⑩ 이성 간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자
- ⑪ 기타 학생으로서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제11장 학과장 및 지도교수]

제46조(직제) <삭제>(2017.11.03.)

제47조 (학과장 및 지도 교수)

① 학과장은 전공 별로 총장이 임명하고, 전공분야 수업과 연구 지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행정 사항을 담당한다.

가. 강의의 원활한 진행

나. 수강 신청을 포함한 학사 지도

다. 학교에서 위임 받은 시험 관리

라. 논문 심사 접수 및 진행 그리고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마. 기타 학교에서 위임한 업무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서 학과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지도 교수는 총장이 위촉하며, 학생의 이수 과목, 주어진 과목의 이수를 지도 담당한다. 단, 논문 지도교수는 석사 주심 1명, 박사 주심 1명으로 하되 총장이 임명한다.

[제12장 대학원위원회]

제48조 (대학원위원회)

- ① 학교에는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과 5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 (심의사항)

대학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학생 입학, 퇴학 및 학생 지도 상벌에 관한 사항
- ② 학과의 전공 교과목 설치와 폐지 및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계획, 시험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
- ⑤ 연구비 지급 또는 보조에 관한 사항
- ⑥ 대학원 학사 운영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⑦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51조 (소집 및 의결 방법)

- ① 대학원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52조 (준용 사항)

학년, 학기, 수업일수, 공휴일, 수료일, 납입금, 상벌, 기타 본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대학 관례에 준용한다.

[제13장 부속 및 부설기관]

제53조 (부속 및 부설 기관)

1. 학교에 다음과 같은 부속기관을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단, 산학 협력단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자체 정관을 둔다.

- ① 도서관
 - ② 출판부
 - ③ 사회교육원
 - ④ 음악교육원
 - ⑤ 사회복지연구원(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⑥ 노인복지교육원
 - ⑦ 교회성장연구원
 - ⑧ 성경 문화연구소(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⑨ 가정·성폭력교육원
 - ⑩ 상담교육원
 - ⑪ 목회대학원
 - ⑫ 국제어학원
 - ⑬ 목회교육원(삭제하고 선교교육원으로 변경)
 - ⑭ 계약학과
 - ⑮ 다문화권연구원(신설 이 항은 대학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 ⑯ 문화복지교육원(신설 이 항도 대학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2. 기타 필요 시 총장은 설치를 공고하고 실시한다.

제54조 (목회교육원)

학칙 제38조, 39조에 근거하여 소정의 이수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이 조항은 목회교육원이 삭제되면 이 조항도 삭제해야 합니다.)

제55조 (산학협력단)

① 본 대학교에는 정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으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그리고

산학협력단장은 ‘대학원위원회’ 위원(당연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4장 계약학과]

제56조 (계약학과 설치) 계약학과 설치운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전액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56조의 1 (계약학과 명칭 및 입학정원, 학위종별)

- ① 계약학과 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1항, 제3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계약학과의 모집학과별 명칭 및 입학정원, 그리고 수업년한, 수여학위는 다음과 같다.
- ③ 계약학과는 산업체와의 계약관계에 의해 모집학과 및 전공변경이 가능하다.

모집학과 및 전공				
과정	학위명	전공	입학정원	수업년한
석사	문학석사 [M.A.]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상담학 사회복지행정학	00	4학기
박사	철학박사 [Ph.D.]	사회복지경영학 사회복지교육학 상담심리치료학 산림치유상담학 무형문화재기능교육학	00	6학기

제56조의 2 (지원자격 및 선발절차)

- ① 계약학과에 입학·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9조 또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중인자로 한다.
- ② 계약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한다.

③ 계약학과의 입학·편입학 절차는 학칙 및 제규정에 따르되,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56조의 3 (수업료 등 납부금)

① 제80조 1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② 제80조 2호에 의한 계약학과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등록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56조의 4 (운영경비) 제80조 각호에 의하여 계약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되, 현금(30% 이상) 또는 현물(20% 이내)로 부담할 수 있다.

제56조의 5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56조의 6 (계약학과 폐지 등)

① 계약학과에 설치된 특정 계약학과의 그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적하는 학생은 계약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학과 또는 본과 동일전공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항의 경우 학업이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의 재적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납입금 등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6조의 7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호를 심의한다.

가. 교육 및 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다.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

라. 계약학과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는 총장이 명하는 학교관계자로 구성하되 계약을 맺

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된 사항만을 집행한다.

④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유고시 대학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한다.

제56조의 8 (학칙 내, 외 사항)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본 학칙이 정한 사항(입학, 편입학, 제적, 재입학, 졸업, 학위, 교과과정, 학과, 학위, 정원, 성적평가 등 기타 사항에 관한 제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학과 학사관리는 '계약학과운영규정'에 따르고 학칙에 정한 사안이 아닐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을 시행한다.

제57조 (세칙)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8조 (개정)

이 학칙의 개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59조 (준용)

이 학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부칙 ①(시행일) 본 학칙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09월 10일부터 적용한다.

②(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0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5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09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0년 0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적용한다.